

# 환경법규

환경부공고 제2014-510호

##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(안) 입안예고

2014년 8월 22일  
환경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-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한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관리제만을 고려한 기존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규정과 양 제도에 공통 적용할 규정을 구분하여 필요사항을 제공하고자 함
- 배출권이 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관련 규정을 개선·보완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제공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지침의 체계 개편(전체)

- 1) 기존의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14-88호)을 '제1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'과 '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'으로 분류함
- 제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,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임

#### 나. 검증 관련 지침의 개정(제5장 및 제9장)

- 1) '제1편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', '제1편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'에 관하여는 "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"의 해당부분을 준용하도록 함

#### 다.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명시(제86조 및 별표14 신설)

- 1) 배출량 보고의 물리적 범위가 되는 조직경계 결정 시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명시

#### 라. 관리업체의 자체 산정 방법론 인정 및 정확도가 높은 산정 방법론의 사용 가능 명시(제87조 제2항 및 제87조 제3항 신설)

- 1)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(기존 지침에서는 별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간 혼선이 발생함)
- 2) 지침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

- 마.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·통보 절차 별표 신설(제87조, 제91조, 제92조 관련 별표 17 신설)
- 1) 기존 지침의 제47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고유 배출계수 사용가능 여부 통보 조항은 절차의 단계가 많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 별표로 별도 신설하고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는 신설된 별표의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함
- 바. 열(스팀)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조항 개정(제95조 개정)
- 1) 열병합 발전시설 뿐 아니라 열전용 시설에서의 열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열(스팀)이용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
- 사. 기타부생연료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조항 신설(제97조 신설)
- 1)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(부생가스, 부생오일, 재생유 등)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하는 경우, 회수하는 관리업체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공급받는 관리업체에 제공하도록 명시
- 아.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(제99조 및 별표29, 별지15 신설)
- 1)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원칙 및 방법, 작성 서식을 신설하고,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기존 이행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명시
- 자.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(별표13 및 별표16 개정)
- 1) 마그네슘 생산, 인산 생산, 카프로락탐 생산, 연료전지에 대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
  - 2) 석탄의 채굴, 원유(석유)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여 해당 별표에 명시
- 차.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명확화 등(별표15 개정)
- 1) 최초로 관리업체가 지정되는 경우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결정 방법을 명시
  - 2) 직전년도 배출량과 직전년도 포함 3개년 배출량 평균값 중 높은 값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시·간적 기준을 명확화
  - 3)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경우, 예상배출량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
  - 4)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산정등급의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, 보조연료 등에 대한 차하위 산정등급 사용 기준을 마련
- 카.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오류 수정(별표18 개정)
- 1)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고, 별표 내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
- 타.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오류 수정(별표16 개정)
- 1) 산정공식의 명확화(함량을 질량분율로 수정, 배출계수 단순화, 유효숫자 및 단위 통일)
  - 2) 기존 방법론의 오류 수정 및 보완(non-CO2 산화계수 적용 오류, 단순 오기 등)
- 파. 연료별 발열량 및 배출계수 용어 등 수정(별표20-21 개정)
- 1) IPCC가이드라인의 연료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료명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, 국내 에너지원 중 B-A유 및 B-B유는 경우와 B-C유의 기본 계수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명시
  - 2)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인 천연가스액, 갈탄의 정의를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 용어로 수정
- 하. 기타(별표19, 23 개정)
- 1) 불확도의 개념 및 관리목적 등 내용을 명확화(별표19)
  - 2) 관리업체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·시험 기준을 추가(별표23)